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단강군

항 공 촬 영 지 침 서

2026. 1. 1.

대한민국 국방부
Ministry of National Defense

목 차

제 1 조(목 적) ····· 1

제 2 조(적용범위) ····· 1

제 3 조(보안책임) ····· 1

제 4 조(항공촬영) ····· 1

제 5 조(항공촬영 신청) ····· 2

제 6 조(항공촬영 금지시설) ····· 2

제 7 조(유인기 이용 항공촬영) ····· 2

제 8 조(보안조치) ····· 3

제 9 조(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) ····· 3

제 10 조(비행승인) ····· 3

제 11 조(행정사항) ····· 4

제1조(목 적)

이 지침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「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」제33조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

제3조(보안책임)

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, 업체 및 기관에 있다.

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,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,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지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제4조(항공촬영)

"항공촬영"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, 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, 지형을 사진,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(항공촬영 민원 신청)

① 제6조 1항의 촬영금지시설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불필요하다. 다만,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.

② 민원인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촬영 4일전(근무일기준)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.

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할 경우 붙임#1의 양식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항공촬영 금지시설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.

1.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
2. 비행장, 군항,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
3.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·지역

②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및「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」등 관계 법,규정/절차에 따른다.

제7조(유인기 이용 항공촬영)

①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임무수행하며, 지역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지역책임부대에서 수행한다.

② 육군 제 17보병사단장 및 지역책임부대장은 유인기 항공촬영 시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, 필요시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.

③ 개인, 업체 및 기관이 유인기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붙임#2의 항공촬영 민원신청서를 문서, 팩스, 기관메일, 등을 이용하여

접수 및 처리한다.

④ 유인기 항공촬영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(근무일기준)에 문서, 팩스,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한다.

제8조(보안조치)

①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·무를 안내하며,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.

② 항공촬영 민원처리 시 항공촬영 민원신청서 이외의 불필요 서류의 제출 및 보완 요구는 금지한다.

③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.

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,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.

④ 제①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
2.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
3.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
4.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

제9조(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)

① 항공촬영 민원처리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지역을 조정하며, 조정결과를 국방부(국방정보본부)로 보고한다.

②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, 붙임#2의 항공촬영 민원신청서를 문서, 팩스, 기관메일,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.

제10조(비행승인)

①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,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(空域)관리기관(합참,수방사,공군 등)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행정사항)

①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체계에서 수시로 항공촬영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,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일 내에 처리한다.

② 항공촬영 민원 처리 후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완료 처리한다.

붙임 #1(국가보안시설)

항공촬영 허가신청서

촬영신청기관 (연락처)			**촬영목적** (용도)		
촬영기간			**촬영구분** (정 · 사각 등)		
촬영지역		**촬영대상**		**촬영위치** (좌표)	
촬영종류 (필름 · 영상 · 수치데이터 등)			**촬영분량**	시간 분 (미리 통)	
촬영장비 **명칭 · 종류**			**촬영고도**		
축 척			**항공기종** (기명)		
이륙 **일시 · 장소**			**착륙** **일시 · 장소**		
항 로		**순항고도**		**항속**	

촬 영 관 계 인 적 사 항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소 속	직 책
기 장				
승무원				
촬영기사				
기 타				

붙임 #2(일반민원)

항공촬영 민원신청서

신청인	**성명/명칭**		**연 락 처**	
촬영계획	**일 시**		**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**	
	목표물		**촬영목적**	
	촬영지역 주소			